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15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동아 · 김용민 · 김의겸
서영교 · 박지원 · 김한규
김남희 · 이성윤 · 박균택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검찰청”을 각각 “공소청, 중대 범죄수사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로, “군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제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건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 등) 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

단,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9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5까지 및 제2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은 “특별검사”로 각각 보되,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특별수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정보통신서비스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보전신청은 특별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

④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로 본다.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간 및 연장)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

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3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9조제4항 중 “「검찰청법」”을 “「공소청법」”으로, “검사”를 “검사 및 군검사”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생략)	제7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대검찰청</u> ,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 -----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u>대검찰청</u> ,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④ ----- <u>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u>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형사소송법」, 「 <u>검찰청법</u> 」(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 <u>군사법원법</u> 」,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u>군검찰관</u> 의 권한에	⑦ ----- 「 <u>공소청법</u> 」(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u>군검사</u> ---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의 임명과 권한) ① (생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담당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
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
은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후단 신설>

③ ~ ⑥ (생략)

<신설>

-----.

제8조(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의 임명과 권한) ① (현행과 같
음)

② -----

-----.

파견검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
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재
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고, 공소유지와 관련된 특
별검사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의2(특별검사 및 특별검사
보의 수사 등) ①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
98조, 제199조, 제200조, 제200

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9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5까지 및 제245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공소청 또는 지청”은 “특별검사”로 각각 보되,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특별수사관”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정보통신서비스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 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보전신청은 특별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

④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부여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

<신 설>

<신 설>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

관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
검사보”로 본다.

제8조의3(특별검사 등의 구속기
간 및 연장) 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
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신청에 의
하여 수사를 계속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
항에 따른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
다.

제8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
의자가 제8조의2에 따라 적용
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
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8조의
3에 따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
한다.

제9조(특별검사 등의 의무) ① ~

③ (생략)

④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④ (생략)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소청법」-----
----- 검사 및 군검사-----

-----.

제10조(수사기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

-----.

제13조(보수 등) ① -----
----- 광역공소청장-----
-----.

② -----
- 지방공소청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